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도12927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 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공갈미수 라.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인 외 2인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9. 7. 선고 2020노52 판결
판 결 선 고	2021. 2.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

1)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통상의 채권양도계약은 그 자체가 채권자지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주된 계약이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양수인이 채권자지위를 온전히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 양도담보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예컨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종된 계약으로,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는 담보목적 달성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이고 주된 관계는 피담보채권의 실현이다. 이처럼 채권 양도담보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적 내용을 통상의 채권양도계약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가치의 유지·보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채무자의 사무처리를 통해 채권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무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사

업자금 명목으로 17억 5,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주식회사 공소외 2 회사의 주식회사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22억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그 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공소외 3 회사에 위 금전채권 중 11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여 이를 주식회사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변제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 양도담보에서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

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공갈죄의 성립,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_____
	대법관	박정화	_____
주 심	대법관	김선수	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